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75,653,755	8,269,613
일반회계		261,070,040	7,832,101
특별회계		14,583,715	437,511
	공기업특별회계	6,694,631	200,839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94,631	200,839
	기타특별회계	7,889,084	236,673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42,127	1,264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318,631	9,5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2,807	12,084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604,637	48,1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455,482	73,66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65,400	91,96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88,03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